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 등의 결과 및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

□ 공개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 공개대상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 취업심사 결과

퇴직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급	퇴직시기	기관 (직위)	시기		
경상북도	지방서기관	2022. 6월	나라솔루션 주식회사 (직원)	2024. 2월	취업가능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경상북도	소방령	2023. 12월	에스티엘 주식회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024. 5월	취업가능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재)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원장	2022. 5월	주식회사 나노 (경영고문)	2024. 1월	취업가능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재)경상 북도경제 진흥원	원장	2022. 10월	주식회사 현대아이티 (경영자문)	2024. 2월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 상기내용은 취업심사 결과이며, 실제 취업여부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 분	주 요 내 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업무취급승인심사 결과

퇴직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급	퇴직시기	기관 (직위)	시기		
경상북도 구미시	지방서기관	2024. 10월	(재)구미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2024. 11월	업무취급 승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의 승인사유에 해당

※ 업무취급승인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제3항)